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김규동
연구위원/경영학박사/보험계리사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 방향』 세미나
2019.06.17 (월)

목차

- I. 인슈어테크란 무엇인가?
- II. 해외 사례 및 국내 환경
- III. 인슈어테크 관련 보험환경 개선 방안

I. 인슈어테크란 무엇인가?

1. 핀테크 vs. 인슈어테크
2. 인슈어테크 관련 기술
3. 인슈어테크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인슈어테크 기술 & 가치창출 매트릭스

1. 핀테크 vs. 인슈어테크

- 핀테크(FinTech)는 시대·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하나의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기술 적용을 통해 금융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인슈어테크(InsurTech)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핀테크의 보험 버전임

핀테크

인슈어테크

• 핀테크는 금융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금융산업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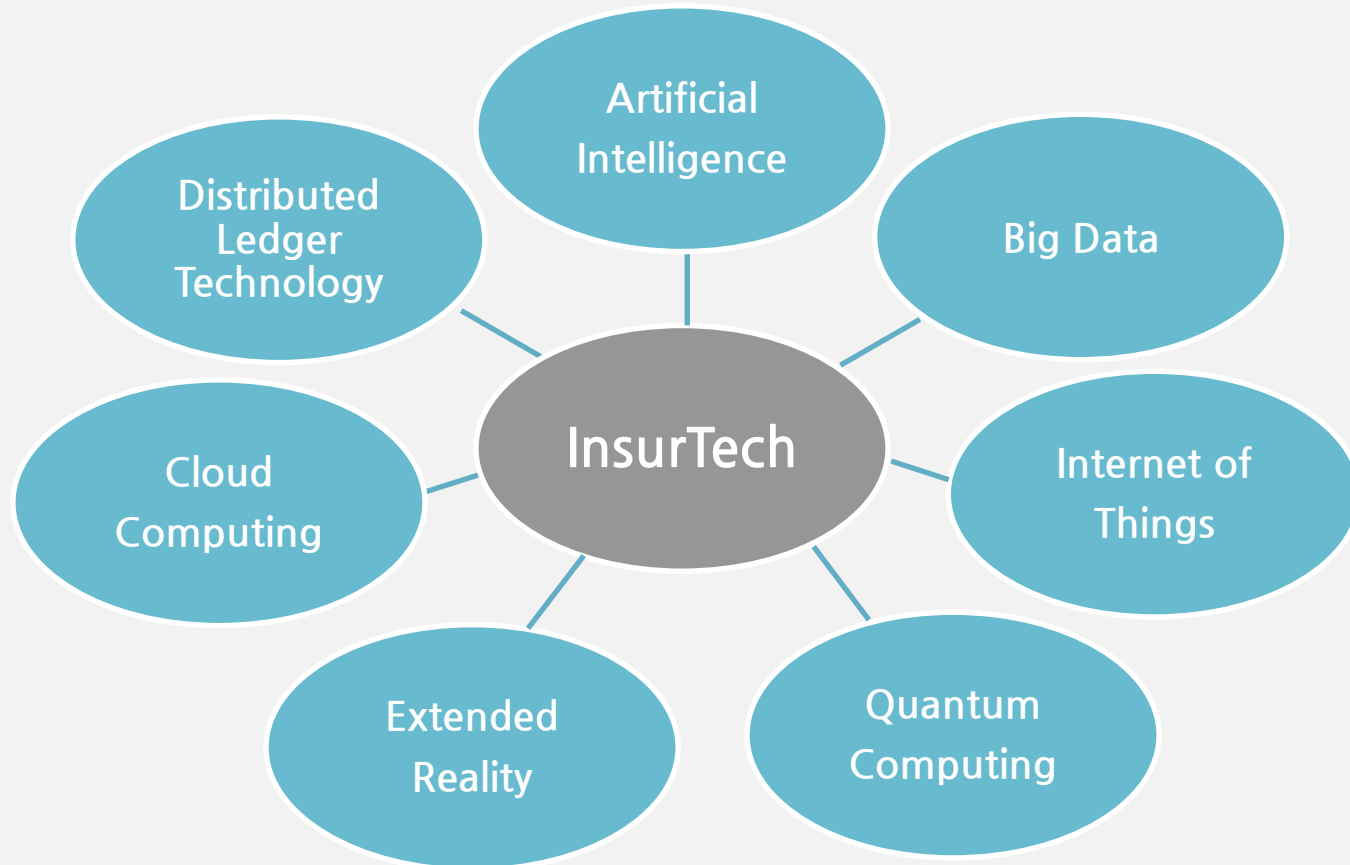
• 인슈어테크는 보험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보험산업

• 금융서비스의 설계와 제공에서 기술의 혁신적 이용
•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고객의 기대 차이를 극복²⁾

• 보험서비스의 설계와 제공에서 기술의 혁신적 이용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고객의 기대 차이를 극복

출처: 1) Patrick Schueffel(2016), "Taming the Beast: A Scientific Definition of Fintech",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4(4).
2) Henri Arslanian(2016), "How FinTech is Shaping the Future of Banking", TEDx Wanchai.

2. 인슈어테크 관련 기술



출처: 1) 김규동(2017),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세미나.

2) Jim Bramblet et al.(2019), “Get Ready for What’s Next in Insurance: Accenture Technology Vision for Insurance 2019”, Accenture.

3. 인슈어테크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와 소비자의 연결성 강화

-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이 더 빈번해지며,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변화
- 전통적인 판매채널을 대체·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의 보험판매
- 보험가입절차 및 보험금 지급심사 기간이 단축
-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

- 언더라이팅, 가격결정, 보험금 지급심사에 다양한 데이터 사용
- 데이터를 분석하는 새로운 플랫폼 등장
-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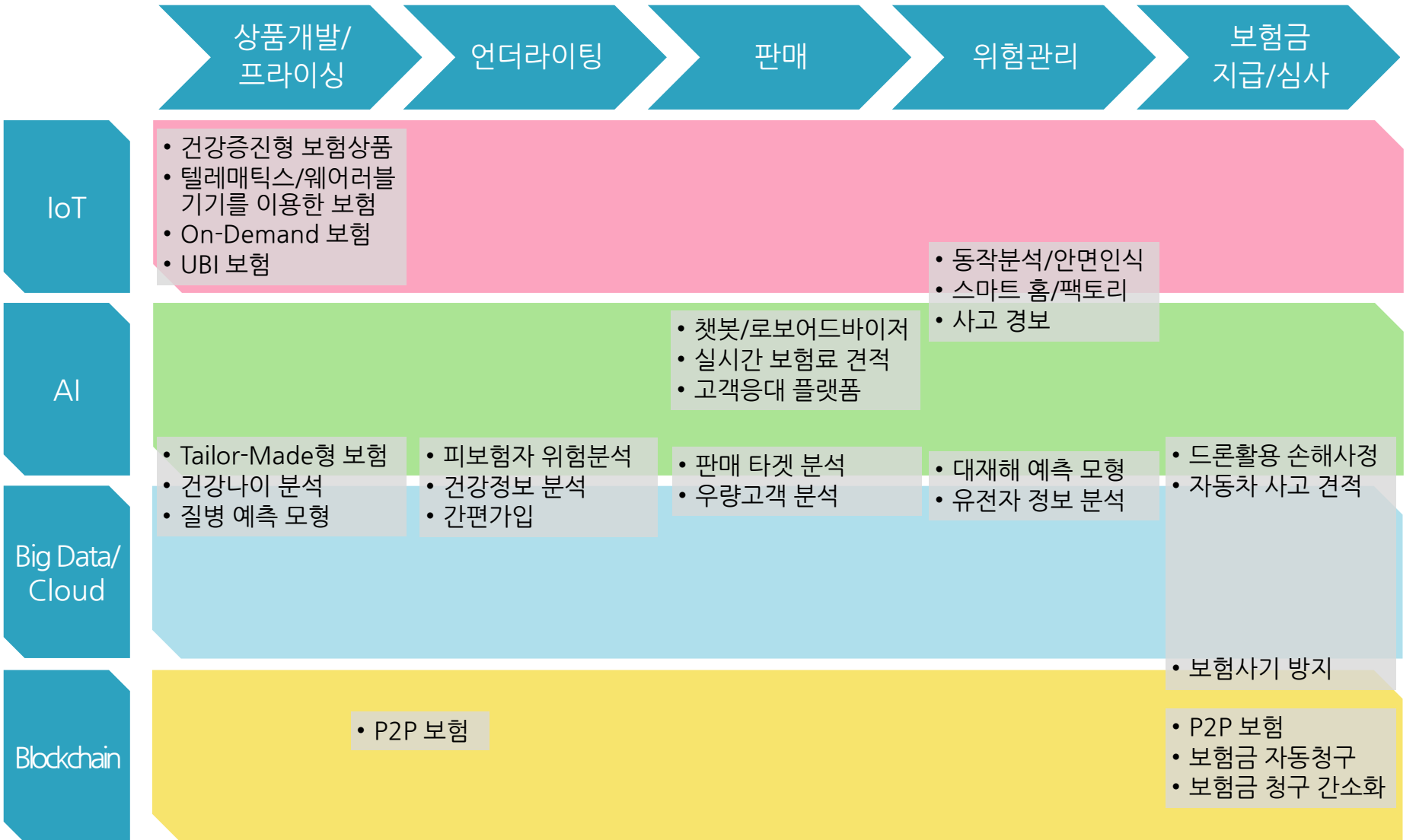
새로운 유형의 상품 개발 가능

- 저비용으로 tailor-made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
- 현대사회에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장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보험상품이 가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기존 보험사업모델과 다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가능
- 보험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 (사고예방 서비스 등)

4. 인슈어테크 기술 & 가치창출 매트릭스



II. 해외 사례 및 국내 환경

1. Lemonade의 주택보험
2. AXA의 항공 지연보험(Fizzy)
3. 중국 Ping An 보험의 “Good Doctor”
4. 중국 Ant Financial의 상호보(相互寶)

1. Lemonade의 주택보험

상품
요약

- 인공지능 채팅 로봇 마야(Maya)와 짐(Jim)을 통해 보험가입(90초)과 보험금지급(3분)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시킴
- 오픈소스 보험약관 "Policy 2.0"은 계약자가 보험약관을 훨씬 쉽게 이해하도록 함

국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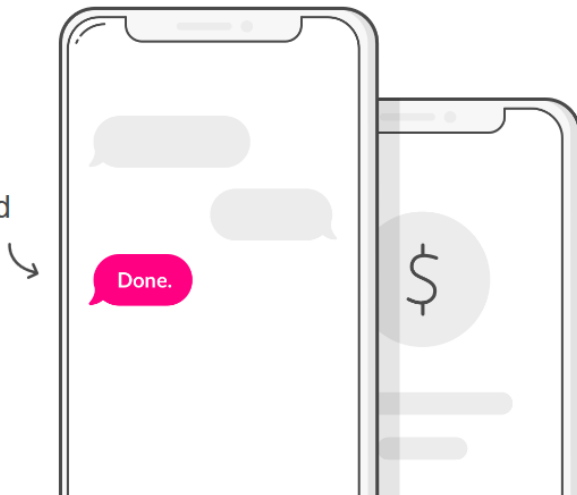
- 소액간단보험에서도 복잡한 청약절차로 신속한 보험가입이 어려우며, 보험약관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강화로 인해 "가벼운" 약관 작성에 한계가 있음

Instant Everything

Maya, our charming artificial intelligence bot, will craft the perfect insurance for you. It couldn't be easier, or faster.

▶ See the Lemonade App in action

90 Seconds
To get insured



3 Minutes
To get paid

Traditional
Policy

VS

Lemonade's
Policy 2.0



Reading Time

206
Exceptions

19,321
Words



Reading Time

11
Exceptions

2,271
Words

Lemon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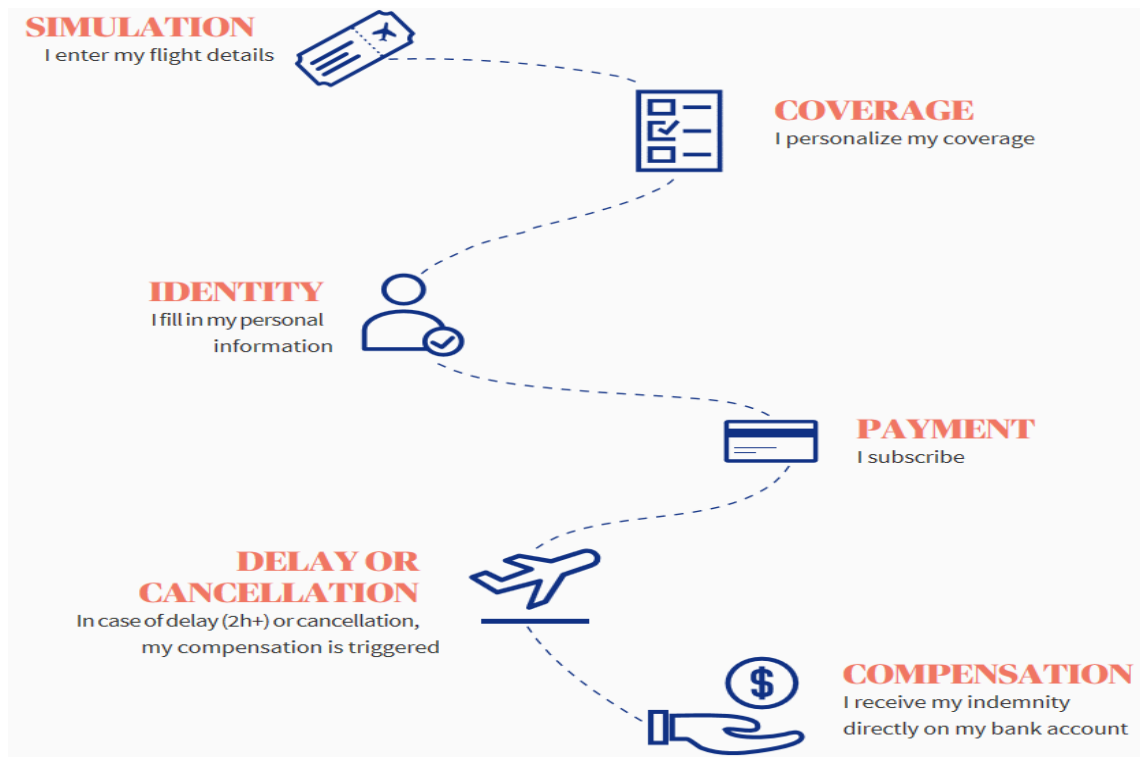
2. AXA의 항공지연보험(Fizzy)

상품 요약

- 다국적 보험회사 AXA가 이더리움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을 이용하여 개발한 항공지연보험
- 출발 5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예약한 항공이 취소되거나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이 약정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됨

국내 환경

- 국내에서는 parametric 보험*에 대한 기준이 없고, 손실보전의 원칙(Principles of Indemnity) 및 비례보상 원칙으로 인해 상품개발이 어려움



3. 중국 Ping An 보험의 “Good Doctor”

상품 요약

- Ping An 보험은 2019년 1월 원스탑 의료 서비스인 “One-Minute Clinic”을 중국 8개 지역에서 출시함
- 의사의 원격의료 서비스와 약품 구입까지 부스에서 가능한 서비스임

국내 환경

- 원격진료가 금지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의료관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제한됨



4. 중국 Ant Financial의 “상호보”(相互寶, Xiang Hu Bao)

상품 요약

- 알리바바의 관계사인 앤트 파이낸셜의 자회사 알리페이가 판매하는 온라인 상호구조플랜으로 P2P보험 형태임
- **보장내용:** 암을 비롯한 100대 중대 질병, 상해 및 후유장애시 정액 보상금(최대 30만 위안) 지급
- **가입조건:** 생후 30일 이상 ~ 만 59세 이하, 지마신용점수 650점 이상, 알리페이 회원, 가입시 건강 상태
- **분담금:** 전체 가입자는 질병·상해 발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한달에 두번 보상금 총액과 8%의 관리비를 전체 가입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알리페이를 통해 분담함(평균적으로 1회 분담금은 0.5위안 이하임)
- * 보험이 아니므로 보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보험처럼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이 발생할 때에 보상금을 분담하는 형태임

상품 연혁

- 2018년 10월 앤트 파이낸셜과 자회사 신미상호(信美相互)보험이 단체보험상품 상호보(相互保)를 출시
- 중국 금융당국은 약관 및 요율의 부당 사용을 이유로 상호보(相互保)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 2018년 11월 앤트 파이낸셜은 보험이 아닌 상호구조플랜으로 “상호보(相互寶)”를 판매
- 2019년 5월 앤트 파이낸셜은 60~70세를 대상으로 하는 “노년 상호보(相互寶)”를 판매
- 가입자 수는 2019년 6월 10일 기준 7천만명을 초과함
- * 2011년을 전후하여 중국에서는 상호보(相互寶)와 유사한 온라인 상호구조플랜 상품이 많이 판매되기 시작함
- * 대형 IT 회사들은 “온라인 상호구조플랜”을 통해 보험과 유사한 사업에 쉽게 진출

상품 특징

- 역선택 방지를 위해 가입 2년 이내 입원 및 주요 질병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으며, 질병에 대해 90일의 면책기간 설정
- 보상금 청구관련 서류를 알리페이에서 공개하여 전체 가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서류를 블록체인에 등재하여 내용 수정을 방지함
- 가입시 언더라이팅 및 지급심사는 상호보가 직접 실시하되, 보상금 지급에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 중에서 선출된 배심원들이 투표를 통해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함

관련 규제

- 2015년 10월 중국 금융당국은 “상호구조플랜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① 보험상품으로 홍보·판매 금지
 - ② 고정된 보험료 약정 금지
 - ③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는 상품이라고 홍보 금지
 - ④ 불법적인 자금 적립 금지

III. 인슈어테크 관련 보험환경 개선 방안

1. 특별이익 제공 기준 완화 /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2. 상품개발 테스트베드 운영 /
소액단기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3. 보험회사와 기술회사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1. 특별이익 제공 기준 완화 /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특별이익 제공 기준 완화

현행
규제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종사자는 최초 1년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이 넘는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
- 다만,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 가능(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애로
사항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아닌 손해보험에서 누수감지장치, 도난방지장치 등 위험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IoT 장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서도 가격 제한으로 인한 상품활성화에 한계

개선
제안

- 별도의 가이드라인 제정 또는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 제공의 금지)에 단서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신고·보고 단계에서 감독기관의 유연한 기준 적용이 필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불명확성 해소

현행
규제

-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하여,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준을 제시

애로
사항

-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행위 등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

개선
제안

- 향후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

2. 상품개발 테스트베드 운영 /

상품개발 테스트베드 운영

현행
규제

-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제출(보험업법 제 127조, 128조)
-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통계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보험업법 제 129조)

애로
사항

-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통계가 미흡하거나 손해보험에서 손실보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품 신고 과정에서 통계가 미흡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변경을 권고

개선
제안

- 소액단기보험에서는 통계가 미흡하거나 손실보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상품을 판매·운영할 수 있는 **상품개발 테스트베드 운영**이 필요

소액단기보험의 가입절차 간소화

현행
규제

- 보험 가입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등 서류의 분량이 많고(약 20장), 자필서명도 2회가 필요
- 여행자보험은 2018년 하반기에 ‘통합청약서’ 마련을 통해 가입절차가 간소화됨

애로
사항

- 2018년 1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에서 소액단기보험의 가입절차 간소화를 계획했으나 여행자보험 외에는 간소화되지 못했으며, 소액단기보험의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개선
제안

- 소액단기보험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액단기보험 가입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하여, 플랫폼을 이용한 보험가입을 활성화할 필요

3. 보험회사와 기술회사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보험회사와 기술회사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현황

- 보험회사와 기술회사가 제휴하여 보험료 할인 등의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애로 사항

- 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보험회사와 기술회사가 협업하지만, 상품 운영 단계에서 기술회사는 계약자의 보험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행위에 대한 결과만 보험회사에 제공할 뿐 보험계약자 행위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음
- 기술회사가 모든 데이터를 독점할 경우 데이터 활용에서 기술회사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서비스 개발 및 장기적인 발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개선 제안

- 기술회사가 데이터를 집적하지만 보험회사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정보이므로, 보험회사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감사합니다